

【 6 】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3. 25.

제출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령 및 조례에 부합되게 정리코자 하며,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9조에 의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유원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개정된 법률 및 조례에 맞게 인용규정을 개정함(안 제3조 제1항, 안제9조 제1항, 제2항, 안 제16조)
- 나.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별지금액"(대인500원, 소인300원)"을 "(대인1,000원 소인500원)"으로 함(안 제9조 제2항)
- 다. 제10조 제1호중 단서조항을 삭제 함(안 제10조 제1항)
- 라. 제15조 제2항중 "위임"을 "위탁"으로 함(안 제15조 제2항)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제12조”를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다.

제9조 제2항중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 동항중 “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0조 제1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제2항중 “위임”을 “위탁”으로 한다.

제16조 중 “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 의부 과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수료의 요율표(제9조 제2항 관련)

대 인	소 인
1,000원	500원

* 비교 : 위 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인 : 13세 이상인 자
 2. 소인 : 6세이상 12세이하인 자

신 구 조 문 대 비 표

第3章 廢棄物管理

●廢棄物管理法 [1991.3.8 法律第4363號全文改正]

改正 1992.12.8 法律第4539號
 1993.3.6 法律第4541號(政府組織法)
 1994.1.5 法律第4714號(環境改善特別會計法)
 1995.8.4 法律第4970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함으로써 環境保全과 國民生活의 質的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2.12.8>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8.4>

1. “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燃燒滓·汚泥·廢油·廢酸·廢 알카리·動物의 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을 말한다.
2. “生活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외의 廢棄物을 말한다.
3. “事業場廢棄物”이라 함은 大氣環境保全法·水質環境保全法 또는 騒音·振動規制法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事業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말한다.
4. “指定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중 廢油·廢酸 등 周邊環境을 污染시킬 수 있는 有害한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廢棄物의 燃却·中和·破碎·固形化등에 의한 中間處理와 埋立·海域排出등에 의한 最終處理를 말한다.
6. “再生處理”라 함은 廢棄物의 中間處理로서 廢棄物을 再利用·再生利用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廢棄物의 中間處理施設과 最終處理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8. 削除 <95.8.4>

第3條 (適用範圍) ①이 법은 原子力法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污染된 物質과 醫療法에 의한 摘出物등과 污水·糞尿 및 茶產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에

(추 68)

第39編 環境 第3章 廢棄物管理 廢棄物管理法

의 溶出등을 分析함에 있어서 그 分析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廢棄物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2章 廢棄物의 排出 및 처리

第12條 (廢棄物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8·4)

第13條 (生活廢棄物의 처리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排出되는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改正 95·8·4>

②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5·8·4>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排出量에 따라 手數料를 차등 徵收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新設 95·8·4>

第14條 削除 <95·8·4>

第15條 (生活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 등) ①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 법으로 당해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②生活廢棄物排出者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종류·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16條 (生活廢棄物保管施設등의 設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廢棄物排出者로 하여금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生活廢棄物保管施設 또는 容器를 設置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추 66)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6.2.5)
(환경부령 제18호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기준) ①영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영 별표 1 제4호 나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7호 내지 제14호 및 제17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3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당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자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 있어서의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5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추 70)

第39編 環境 第3章 廢棄物管理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제 6 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등) ① 영

제 6 조제 1 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외에 따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지도 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③ 영 제 6 조제 3 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산·폐알칼리등 수분함량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 2 조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생처리하는 경우 또는 재생처리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제품의 원료·재료 또는 연료등으로 재생처리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과쇄·분쇄, 절단, 용융, 사료화·퇴비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 1 호 다목 내지 바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제 7 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추 70)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기간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개선·대체등에 필요한 조치내용 및 대상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개선조치등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폐유, 폐유기용제,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페사(이하 "폐사"라 한다), 폐내화물, 재벌구이전에 시유된 도자기편류(이하 "도자기편류"라 한다),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또는 폐농약의 배출량이 각각 월 50킬로그램미만이거나 그 합계가 월 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나. 폐산·폐알칼리·폐합성고분자화합물 또는 폐석면의 배출량이 각각 월 100킬로그램미만이거나 그 합계가 월 2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다. 오너의 배출량이 월 5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

(추 70)

제 8 편 환경보호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 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 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1994. 12. 29]
[조례 제1518호]

개정 1995. 4. 13 조례 제1532호
개정 1996. 7. 8 조례 제1576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 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 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장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 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 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 운 폐기물로써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일반폐기물 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 4 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 하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 야 한다.

③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 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추10)

제 8 편 환경보호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 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 5 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짙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 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 7 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양주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양주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6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다.

제 8 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 8 편 환경보호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저급할 수 있다.

제 9 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동산로동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의 타 조례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 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추10)

제 8 편 환경 보호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의 타 조례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사무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지도와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와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 기타 시책 추진의 상황에 따라 새롭게 도출되는 사항등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12.29 조례 제15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일반용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의 부착과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1994년 12월 2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 내지 제20조는 삭제한다.

부 칙 (1995. 4.13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8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10)

제 5 편 사회진흥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1990. 9. 7]
조례 제1331호

개정 1991.12.31 조례 제1396호

〃 1993. 8. 6 조례 제1458호

〃 1993.11.25 조례 제1466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 산간,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체계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공립 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를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 3 조(지정)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구역 중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4 조(폐지 및 구역변경) ①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추3)

제 5 편 사회진흥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 5 조(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6 조(사용허가) ①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부지의 사용

2. 공작물의 설치 및 변경

3. 물품 판매 등 상행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제 1 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시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 7 조(허가취소등) 군수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

5.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질서 행위를 문란케 한 때

6.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 8 조(권리양도의 제한등)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추3)

제 5 편 사회진흥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 9 조(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지와 같다. 다만, 청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2.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3. 6세미만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수수료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자연환경 오손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5.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수수료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2 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상)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입장자에게 대하여는 제9 조 제2항 “별표 1” 기준에 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0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임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추3)

제 5 편 사회진흥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령과 군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0. 9. 7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12.31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8. 6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1.25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수수료의 요율표(제 9 조제 2 항 관련)

대 인	소 인
500원	300원

※ 참고 : 위 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인 : 13세이상인 자
2. 소인 : 6세이상 12세이하인 자

(추3)